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최근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로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(안 제2조제6호바목)

- 1) 당초: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
- 2) 변경: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

나. 국립묘지 최초로 국립괴산호국원에 자연장지가 시범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 등 안장 관련 물품의 재질 및 규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·제2항, 안 제17조의2제2항제2호·제3호·제4호, 안 제17조의3제3항, 안 제18조제2항, 안 제19조제1항·제2항)

- 1) 자연장용 유골함 규격 등 신설 및 개인식별표 규격 변경
- 2) 자연장시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토록 명시하고, 생분해되는 유골함의 특성상 유골함 안에 흙을 채워 안장할 수 있도록 함
- 3) 자연장용 유골함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인정하는

경우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- 4) 유골을 흙과 유골함을 제외한 다른 물품과 함께 안장을 제한하도록 한
현 조항이 오해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변경
- 5)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장소에 자연장지를 추가
- 6) 안장의 실시 관련 대상 시설 등에 자연장지를 추가

다.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7115호, 2020. 3. 24. 공포, 2020. 9. 25. 시행)에 따라, 국가관리묘역 지정·관리, 배우자 및 직계존속·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이장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

- 1) 배우자 및 직계존속·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제19조의2 신설)
- 2) 국가관리묘역의 지정·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제28조 신설)
- 3)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요청, 지정기준 및 절차, 지정해제, 고시 및 통지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(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 신설)
- 4) 국가관리묘역의 관리,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(제33조, 제34조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바목 중 “광덕4길”을 “호국로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유골함은 매장용, 안치용 및 자연장용으로 구분하고, 각각의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: 자기·옥 또는 동
2. 자연장용 유골함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

② 유골함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: 지름 21센티미터, 높이 22센티미터(뚜껑 2.5센티미터 포함) 이내
2. 자연장용 유골함: 지름 18센티미터, 높이 19센티미터(뚜껑 2.5센티미터 포함) 이내

제1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

호) 중 “제2호 각 목의 용기 외의”를 “자연장용 유골함을 제외하고는 다른”으로 한다.

2. 자연장시 제17조에서 정한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, 생분해 되는 유골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골함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.

3.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용 유골함을 묻을 수 없다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

제17조의3제3항 중 “크기는 가로 12센티미터, 세로 7센티미터”를 “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묘 또는”을 “묘, 자연장지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묘 또는”을 “묘, 자연장지 또는”으로, “묘지번호”를 “묘지번호, 자연장지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묘와 봉안시설은 묘역별”을 “묘,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묘역별, 자연장지별”로, “묘와”를 “묘, 자연장지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이장비용의 지원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이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은 국립묘지 이장 신청자에게 지원한다. 다만, 묘지 이장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

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장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8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·관리 등의 업무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이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(功勳)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해제
2.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및 운영
3. 국가관리묘역 활용방안의 마련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, 국가관리묘역이 적절하게 지정·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9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요청 등) ①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나 유족 또는 관리자(이하 “묘역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합동묘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묘역소유자등이 상이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30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같은 구역 안에 2기 이상 묘의 형태로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. 다만 가족묘지, 종중·문중묘지,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이나 시신의 안장을 목적으로 한 법인묘지, 종교단체가 설치·관리하는 묘지는 제외

2. 소유자·관리자·유족 의견

3. 애국심 고취 및 향후 활용 가능성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, 그 지정여부에 관하여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제31조(국가관리묘역 지정의 해제)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을 해제하려면 그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

한다.

제32조(국가관리묘역의 고시 및 통지)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3조(국가관리묘역 관리) ①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보훈처가 한다. 다만, 관리의 대상은 국가관리묘역 지정 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 및 기념관, 현충탑 등 부대시설에 한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별초, 단장 등 묘 개보수 및 주변정화
2. 기념관, 현충탑 등 시설의 유지관리
3. 국가관리묘역의 활용을 위한 안내·홍보
4. 묘적부 등 국가관리묘역의 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
5.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34조(국가관리묘역 관리 등 권한의 위임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합동묘역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합동묘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

1.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
2. 제32조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

3. 제33조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관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2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, 제17조의3제3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호·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장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가관리묘역 지정에 관한 경과규정)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전 법 제3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과 같은 구역 내에 함께 안장된 미등록 독립운동·전사자 등을 포함해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립묘지의 위치)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6. 국립호국원 가. ~ 마. (생략) 바. 국립괴산호국원: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<u>광덕4길</u> 7. (생략)	제2조(국립묘지의 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----- <u>호국로</u> 7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유골함의 규격과 재료) ① <u>유골함은 매장용과 안치용으로 구분하고, 재질은 자기·옥 또는 동으로 제작한다.</u>	제17조(유골함의 규격과 재료) ① <u>유골함은 매장용, 안치용 및 자연장용으로 구분하고, 각각의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: 자기·옥 또는 동</u> <u>2. 자연장용 유골함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</u>
② <u>유골함의 크기는 지름 21센티</u>	② <u>유골함의 크기는 다음 각 호</u>

미터, 높이 22센티미터(뚜껑 2.5
센티미터 포함) 이내로 한다.

③ (생 략)

제17조의2(자연장의 종류 및 방
법) ① (생 략)

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
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다음 각 목의 용기를 사용하
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골을
흙과 섞어서 묻을 것

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
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
지제품

나.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
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
것

<신 설>

와 같다.

1.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: 지
름 21센티미터, 높이 22센티미
터(뚜껑 2.5센티미터 포함) 이
내

2. 자연장용 유골함: 지름 18센
티미터, 높이 19센티미터(뚜껑
2.5센티미터 포함) 이내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자연장의 종류 및 방
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자연장시 제17조에서 정한
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여
야 하며, 생분해 되는 유골함
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골함에
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.

3.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자연장용 유골함을 묻을 수

3. 유골을 흙 또는 제2호 각 목의 용기 외의 물품(유품을 포함한다) 등과 함께 묻지 말 것

제17조의3(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(標識)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식별표를 설치하되, 개인식별표의 크기는 가로 12센티미터, 세로 7센티미터로 한다.

제18조(유골의 임시 안치 등) ① (생략)

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없다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

4. ----- 자연장용 유골함을 제외하고는 다른 -----

제17조의3(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 -----

-----.

제18조(유골의 임시 안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묘, 자연장지 또는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안장의 실시) ① 국립묘지 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·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,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묘와 봉안시설은 묘역별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, 묘와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19조(안장의 실시) ① -----

----- 묘, 자연장지 또는 ----- 묘지번호, 자연장지번호 -----
-----.

② 묘,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묘역별, 자연장지별 -----
----- 묘, 자연장지 또는 -----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이장비용의 지원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이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은 국립묘지 이장 신청자에게 지원한다. 다만, 묘지 이장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장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8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·관리 등의 업무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이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(功勳)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해제

2.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및 운영

3. 국가관리묘역 활용방안의 마련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

<신 설>

<신 설>

조하고, 국가관리묘역이 적절하게 지정·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9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요청 등) ①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나 유족 또는 관리자(이하 “묘역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합동묘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묘역소유자등이 상이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30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같은 구역 안에 2기 이상 묘의 형태로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. 다만 가족묘지, 종중·문중묘지,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이나 시신의 안장을 목적으로 한 법인묘지, 종교단체가 설치·관리하는 묘지는 제외
2. 소유자·관리자·유족 의견
3. 애국심 고취 및 향후 활용 가능성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, 그 지정여부에 관하여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31조(국가관리묘역 지정의 해제)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조의 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을 해제하려면 그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과 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신 설>

제32조(국가관리묘역의 고시 및 통지)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3조(국가관리묘역 관리) ①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보훈처가 한다. 다만, 관리의 대상은 국가관리묘역 지정 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 및 기념관, 현충탑 등 부대시설에 한한다.
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1. 벌초, 단장 등 묘 개보수 및

<신 설>

주변정화

2. 기념관, 현충탑 등 시설의 유지관리

3. 국가관리묘역의 활용을 위한 안내·홍보

4. 묘적부 등 국가관리묘역의 관리·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

5.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34조(국가관리묘역 관리 등 권한의 위임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합동묘역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합동묘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

1.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

2. 제32조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

3. 제33조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관리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, 예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551 (044) 202 - 5585